

특별회의
기후위기와 국가의 책임

기후위기로 인한 인권 침해와 국가책임

김태호
[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원]

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재난은 인권의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. 이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장기적, 단기적 공백을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. 환경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특히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에 집중되어 그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한다. 이것의 방치는 장차 우리 공동체 전체 삶의 토대를 허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.

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라는 관점에서 기후 위기는 국가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가, 그 책임은 어떠한 구체적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하는가, 국가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인권 침해의 구제 수단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, 본 발표는 이에 대한 기존 법체계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소개하고 검토하게 될 것이다.